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 결 사 항	
------------------	--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10. 6.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0. 6.

제 출 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안 제3조)
- 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안 제4조)
- 라. 특별회계 설치(안 제5조)
- 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33086(2023. 8. 25.)]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370호

가) 예고기간: 2023. 08. 25. ~ 2023. 09. 14.(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부서 사전협의

-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원안가결)[기획예산담당관-13025(2023. 8. 25.)]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에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면 전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운영
2.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4. 에너지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5. 육성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6.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문화재 지킴이, 재난구호 활동 등을 위한 사업
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읍면장이 수립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경제기업과장 한 영 대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